

**문**: 災火保險의 對象과 範圍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 保險用語上 保險의 對象이라 함은 保險의 目的物을 말합니다.

이러한 災火保險의 目的物이 될 수 있는 범위는 災火로 인하여 經濟的 損失을 입게 될 財產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自動車保險이나 海上保險 등과 같이 保險種目을 달리하여 損害를 補償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므로 그 財產의 用途, 位置, 危險 등에 따라 保險種目이 달라집니다.

火災保險에 있어서의 用途를 分類해 보면

1) 住宅物件: 이는 住宅으로만 쓰이는 建物中 ① 獨立住宅 ② 住宅의 附屬建物로서 家財만을 收用하는데 쓰는 것 ③ 联立建物(聯棟建物) 및 高層建物로써 貸室數가 5개 미만이며 각戶가 住宅으로만 쓰는 것 ④ 建物아 2級構造인 「아파트」로서 貸室數가 5개 미만이며 각室 모두가 住宅으로만 쓰는 것과 그 收容動產을 말합니다.

2) 一般物件: 住宅物件, 倉庫物件 및 工場物件을 제외한 것으로서 ① 並用住宅, 店舖, 事務室, 學校, 館閣 및 이들의 附屬倉庫 등의 건물 및 工作物 ② 動力設備 1KW

이상 15KW 미만 또는 動力外에 使用하는 電力設備 5KW 이상 30KW 미만, 또는 作業人員이 늘 3人이상 15人 미만인 作業場의 建物 ③ 앞의 각 號의 建物내에 수용하는 動產 및 露積의 動產 등입니다.

3) 工場物件: 다음 각 號의 하나에 해당하는 工場 또는 作業場(鑄業所, 發電所, 變電所 및 開閉所 포함)의 구내에 있는 建物, 工作物과 이에 收容된 機械, 動產 및 露積의 動產으로서 ① 作業에 쓰는 動力의 合計가 15KW 이상인 것 ②

여 貨物保管의 特權에 쓰이는 것 ③ 营業用保稅倉庫 및 保稅藏置場으로서 稅關長의 承認을 얻어 保稅貨物保管의 特權에 쓰이는 것 등을 말합니다.

한편 災火保險契約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保險證券에 目的物 하나 하나가 明白히 記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기재한 物件은 다른 特約이 없는 한 保險證券에 記載되지 않아도 自動적으로 保險의 目的에 포함됩니다.

① 建物인 경우에 被保險者의 所有인 간라이, 建物의 從物, 電氣, 「가스」, 暖房, 冷房 및 그 밖의 附屬設備

② 動產인 경우에 被保險者가 家口主인 때에는 그 家口에 속하는 친족 및 使用人の 所有物등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기재한 物件은 保險證券에 명백히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① 門, 담, 울타리, 곳간, 헛간 및 그 밖의 附屬建物

② 通貨, 유가증권, 印紙, 우표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貴金屬, 보석, 書畫, 骨董品, 那刻物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稿本, 설계서, 도안, 보, 鑄型, 本型, 紙型, 模型, 證書, 帳簿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입니다.

## 火災保險 相談



作業에 쓰는 電力의 合計가 30KW 이상인 것 ③ 作業人員數가 늘 15人 이상인 것 입니다.

4) 倉庫物件: ① 農業協同組合이 占有하는 建物로서 農業倉庫業法에 따라 貨物保管의 目的에 쓰이는 것 ② 水產業協同組合이 占有하는 建物로서 農水產部長官의 許可를 얻

##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 의 付保節次」

事務所에 해야하며 가까운 損害保險會社에 問議해도 「損害保險共同事務所」에 案内된다.

4. 保險契約時는 請約書(別途 양식)에 필요한 内容을 記載해야 하며 同時に 保險料를 納入해야 한다.

5. 保險金은 災火保險의 경우 時價에 해당하는 金額,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은 死亡이 被害者 1人當 50만원 이상, 負傷이

被害者 1人當 死亡保險金額範圍內에서 加入해야 한다.

6. 特殊建物所有者的 從業員이 保險契約對象에서 除外될 경우(產業災害補償保險加入)에는 特約料率에서 割引率을 適用한다. 割引率은 事務室用 一般建物: 60%, 「호텔」·病院·放送設施場·撮影所: 40%, 料理店·社交場·學校·講習所: 20%, 公演場·市場·百貨店: 10%로 되어 있다.

1. 特殊建物所有者는 保險加入 및 契約更新時 韓國火災保險協會의 災火豫防 및 滅災設施에 대한 安全占檢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따른 韓國火災保險協會의 安全點檢은 無料로 實施한다.

2. 安全點檢要請은 韓國火災保險協會에 申請해야 하며 각 損害保險會社나 「損害保險共同事務所」에 申請해도 된다.

3. 保險加入은 「損害保險共同